보도자료1

2023년 세법개정안

2023. 7. 27.

기 획 재 정 부

순 서

Ⅰ. 세법개정 추진경과 및 여건 ····· 1

1. 그간의 추진경과 ····· 1
2. 조세정책 여건 ····· 2

<참고> '23년 세법개정 추진경과 ····· 3

Ⅱ. 2023년 세법개정 기본방향 ····· 4

Ⅲ. 세법개정 상세 내용 ····· 5

1. 경제활력 제고 ····· 6
1) 투자·고용 촉진 ····· 6
2) 기업경쟁력 제고 ····· 9
3) 창업·벤처 활성화 ····· 11

2 민생경제 회복 ····· 12
1) 서민·중산층 부담 경감 ····· 12
2) 소상공인·중소기업 지원 ····· 15

3. 미래 대비 ····· 17
1) 결혼·출산·양육 지원 ····· 17
2)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····· 18
3) 지역균형 발전 ····· 19

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····· 20
1) 납세자 권익 보호 ····· 20
2) 조세회피 관리 강화 ····· 22
3) 과세형평 제고 ····· 24

<참고> '23년 말 일몰도래 조세지출 정비·재설계·연장 현황 ··· 25

Ⅳ.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····· 28

Ⅴ. 추진일정 ····· 29

Ⅰ. 세법개정 추진경과 및 여건

1 그간의 추진경과

□ 지난해 투자촉진 · 민생안정 지원 및 부동산세제 정상화 개편

○ **(투자촉진) 법인세율 인하,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, K-칩스법** 및 **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** 등 **기업투자 촉진**

▪ 해외자회사배당금 익금불산입 등 **글로벌 스탠더드**에 맞는 세제개편을 통해 **국내투자 자금유입 및 경상수지 개선** 등 기여*

* 금년 1~5월 배당수지 대폭 증가(+116.7억불, 전년比 127.6억불)
→ 에너지 수입 증가 등에 따른 경상수지(△34.4억불) 적자 축소에 크게 기여

▪ 가업승계 관련 조세지원 확대*로 **세대 간 기술·자본이전 촉진**

* 중견기업 대상확대(매출 4→5천억원 미만), 공제한도 상향(+100억원), 사후관리 기간 축소(7→5년), 상속 ·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

○ **(민생안정) 소득세 과표 조정, 근로 · 자녀장려금 확대**, 식비 · 주거비 · 교육비 · 문화비 등 **생계비 경감** 등 **서민·중산층 지원 확대***

*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 상향, EITC 최대지급액 10% 확대 및 요건완화,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(月 10→20만원), 월세세액공제 확대(최대 12→17%) 등

○ **(부동산세제 정상화)** 담세능력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중과되었던 **부동산 세제**를 **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***

* (종부세) 다주택자 중과 완화, 기본공제 확대,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
(양도세) 다주택자 중과 한시 유예,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등

□ 금년 조기시행 과제는 상반기 중 수시 개정 · 조치 완료

○ 물가안정, 경제활력 제고 등 **적기 대응**을 위해 **'23년 상반기 중 법률 및 시행령 수시개정 완료**

〈 '23년 상반기 중 세법개정 주요 내용 〉

①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4개월 연장(5.1~8.31)
② 22개 농·축·수산물 등 할당관세 인하
③ 국가전략기술 범위 구체화,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신설 등
④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세액공제 연계
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6개월 연장(7.1~12.31)
⑥ 전세사기특별법 및 후속 시행령(세제부문) 제정

○ 「**내수활성화대책**」('23.3월), 「**하반기 경제정책방향**」('23.7월) 등 각종 대책에서 **세법개정 주요과제 기발표**

2 조세정책 여건

□ [경제 여건] 물가 둔화 및 경기 개선이 예상되나, 불확실성 상존

○ **물가**는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**둔화 흐름**을 이어가겠으나, **지정학적 리스크, 기상여건** 등에 따라 **변동 가능성**

* 6월 소비자물가 2.7%(21개월만에 최저), 생활물가 2.3%(27개월만에 최저)

○ **경기**는 **반도체 업황 회복*** 등으로 **점차 개선**되겠으나, 美 **성장 둔화** 및 中 **경제회복 지연** 우려 등은 **제약요인**으로 작용

* 글로벌 D램 매출(십억불, Gartner(6월)) : ('23.1/4) 9.6 (2/4^{e}) 9.8 (3/4^{e}) 10.9 (4/4^{e}) 13.4

□ [구조적 여건] 인구위기 · 생산성 정체 등 구조적 문제 심화

○ 생산연령인구 감소* 등 **인구구조 변화, 지역소멸 위기 등 가속화**

* 생산연령인구 증감(만명, 15~64세) : ('10) 34 ('15) 19 ('20)△15 ('25^{e})△32

○ 디지털·인공지능 기반, 문화·콘텐츠 중심의 **산업구조 변화,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응** 강화 필요

□ [재정 여건]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성장-세수의 선순환 복원 필요

○ 금년 **국세수입**은 **어려운 상황***이나, **하반기 이후 경기회복****시 **세입여건**이 **개선**될 것으로 전망

* '23년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60.2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△36.4조원 감소
** 성장률 전망(전년동기비, %) : ('23.上) 0.9 → ('23.下) 1.8 → ('24년) 2.4

○ 재정수지 적자 심화 등* **재정의 지속가능성**에 대한 우려 가중, 복지지출 증가 등 위한 **재정수요는 지속 확대**

* 관리수지(조원) : ('17)△18.5 ('19)△54.4 ('20)△112.0 ('21)△90.6 ('22)△117.0

☞ **지난해에 이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, 민생안정 및 인구·지역 위기 등 미래대비를 위한 당면과제 중점 추진**

참 고 **'23년 세법개정 추진경과**

□ 대내·외 각계 의견수렴 및 성과평가 등을 거쳐 개정안 마련

❶ **(개정 건의)** 국세청, 관세청, 대한상의, 중소기업중앙회, 세무사회 등 **42개 단체**에서 **1,381건 세법개정 건의**

❷ **(비과세·감면 평가)** 일몰 도래 또는 신설 예정 조세지출에 대해 **심층평가**(일몰 도래)* · **예비타당성평가**(신설 예정)** **24건 진행**

* 감면액 연 300억원 이상 의무심층평가 + 주요 조세지출항목 임의심층평가 : 23건

** 감면액 연 300억원 이상 특례 신규 도입시 예타 의무 : 1건

❸ **(대내 논의)** 주요 쟁점에 대해 세제실 내 **조세정책심의회*** **수시 개최**

* 세법 개정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

- (참석자) 세제실장, 국장 5명, 조세정책과장, 담당과장 및 사무관 등

❹ **(대외 의견 수렴)** 경제·시민단체, 전문가 그룹, 학계 등 다양한 **경로**를 통해 **의견**을 **수렴**

구 분	내 용
▸ 관계기관 간담회	▸ 금융단체, 경제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
▸ 세제발전심의위원회	▸ 세제분야 전문가*와 세제개편 방향 및 주요 과제 논의 * 소득·기업·재산·소비·국제조세·관세 등 6개 분야로 구성
▸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	▸ 중장기적 시야에서 경제·재정여건을 전망하고, 정책방향 점검 * 조세 분야 및 경제·사회·복지·환경·통일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

Ⅱ. 2023년 세법개정 기본방향

❶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**수출·투자·고용 지원**

❷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·중산층 **세부담 경감, 소상공인·중소기업** 지원

❸ 인구·지역 등 구조적 위기극복 위한 **출산·양육, 지역균형발전** 지원

❹ **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**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

정책 목표

경제 활력 · 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

추진 전략

경제활력 제고

수출·투자·내수 진작

- ✓ 투자·고용 촉진
- ✓ 기업경쟁력 제고
- ✓ 창업·벤처투자 활성화

민생경제 회복

세부담 완화

- ✓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
- ✓ 소상공인·중소기업 지원

미래 대비

인구·지역 등 구조적 위기 극복

- ✓ 결혼·출산·양육지원
- ✓ 청년자산형성 및 노후대비
- ✓ 지역균형 발전

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

납세자 친화적 환경·세입기반 확대

- ✓ 납세자 권익보호
- ✓ 조세회피 관리 강화
- ✓ 과세형평 제고

Ⅲ. 세법개정 상세 내용

1. 경제활력 제고

투자고용 촉진	‣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‣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‣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
기업경쟁력 제고	‣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‣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‣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시기 조정
창업벤처 활성화	‣ 직무발명금 비과세 한도 상향 ‣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법인 세액공제 등 신설 ‣ 기술 혁신형 M&A 요건 완화

2. 민생경제 회복

서민·중산층 부담경감	‣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‣ 전통시장 · 문화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‣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‣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
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	‣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‣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신설 ‣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 특례 연장

3. 미래 대비

결혼출산양육 지원	‣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‣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‣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‣ 근로자 출산 · 양육 지원금의 손금 · 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
청년자산형성 노후대비	‣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‣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등 비과세 적용 연장 ‣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
지역균형 발전	‣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‣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

4.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

납세자 권익보호	‣ 조세불복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 ‣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
조세회피 관리강화	‣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부여 ‣ 국외주식 기준보상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여
과세형평 제고	‣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‣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

1 경제활력 제고

◇ 기업투자·고용·내수 촉진, 벤처·창업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

1) 투자 · 고용 촉진

□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(조특법)

※「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」('23.7.4.)에서 기본방향 발표

○ K-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**영상콘텐츠 제작비용**에 대한 **세액공제율 대폭 상향**

▪ **(기본공제)** TV프로그램, 영화, 드라마 등 **영상콘텐츠 제작비용** (배우출연료, 인건비, 세트제작비 등) **기본공제율 상향***

* (현 행) 대3/중견7/중소10% → (개정안) 대5/중견10/중소15%

▪ **(추가공제)** 국내 산업 **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*** 등을 대상으로 **추가공제**(10/15%) **적용**

* (예) 총 제작비용 중 일정비율 이상 국내지출 등(시행령에서 구체화 예정)

< **제작비용 세액공제율**(%) >

구 분	기본공제			추가공제		최대 공제율
	현 행		개정안			
대기업	3	→	5	10	⇨	15
중견기업	7	→	10	10		20
중소기업	10	→	15	15		30

(+)

○ 중소·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**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**에 대한 **세액공제**(3%) **신설**

□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(조특령 · 조특칙)

※「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」('23.6.1) 및「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」('23.7.4.)에서 발표

*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: (시설투자) 25~35%, (R&D) 30~50%
신성장·원천기술 세액공제 : (시설투자) 16~28%, (R&D) 20~40%

❶ **(국가전략기술)** **바이오의약품** 관련 기술·시설을 **국가전략기술·사업화 시설에 포함***하고, **하반기**('23.7.1.~) **R&D지출·시설투자 분**부터 적용

*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·제조기술, 임상1~3상 기술 등 8개 기술 및 바이오신약 제조시설 등 4개 사업화시설('23.8월 중 조특령·규칙 개정 예정)

❷ **(신성장원천기술)** **에너지효율 향상** 핵심기술 및 **핵심광물 등 공급망** 관련 필수기술 등 **신성장·원천기술 범위 확대**

※ 구체적인 기술 범위는 정기 시행령 개정('24.2월) 시 반영

□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(리쇼어링) 세제지원 강화 (조특법 · 조특령)

❶ **(세액감면 확대)**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**소득세·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**(7→10년) **확대***

* (현 행) 5년 100% + 2년 50% → (개정안) **7년 100% + 3년 50% 감면**

❷ **(업종요건 완화)** 해외진출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**세제지원 업종요건 유연화***

※「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」('23.7.4.)에서 발표

* (현 행)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동일
(개정안)「해외진출기업복귀법」상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인정

□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(조특법)

※「2023년 경제정책방향」('22.12.21.)에서 발표

○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**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***(투자 또는 출자금액의 3%) **도입**

*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, 지원금에 의한 투자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

□ 수소제조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(개소령)

○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제조용 LNG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**수소제조용 LPG**에 대하여 **낮은 탄력세율**(기본세율의 △30% 인하)* 적용

* (프로판) 20→14원/kg, (부 탄) 275→176.4원/kg

□ R&D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특례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)

○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R&D 촉진 및 기술사업화 유도를 위해 **기술 이전·대여 소득**에 대한 **세액감면*** 적용기한 **3년 연장**(~'26.12.31.)

* 기술 이전소득의 50%, 대여소득의 25% 세액감면

○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중소·중견 기업의 **신재생에너지 생산·이용 기자재 수입물품**에 대한 **관세감면**(50%) **3년 연장**(~'26.12.31)

□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유입 지원 (조특법 · 조특령)

※「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」('23.7.4.)에서 기본방향 발표

❶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* 적용기한 **5년 연장**(~'28.12.31.)

*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의 소득세를 50% 감면(10년간)

▪ **(대상확대)** 외국인이 **유망 클러스터* 내 교수 임용** 시에도 적용

* 연구개발특구, 첨단의료복합단지 등

※「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」('23.6.1.)에서 발표

❷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* 적용기한 **5년 연장**(~'28.12.31.)

* 비과세・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근로소득에 단일세율(19%) 선택 허용(20년간)

▪ 외국인근로자의 **사택제공이익**을 **근로소득에서 항구적으로 제외***하여 **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**

* 현재는 '23.12.31.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 중

□ 원양어선 · 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(소득령)

○ 선원인력 확충 및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**원양어선·외항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확대**(월 300→500만원)

□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)

○ **중소기업 취업자**에 대한 **소득세 감면*** 적용기한 **3년 연장**(~'26.12.31.)

*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3년간 70% (청년은 5년간 90%) 근로소득세 감면(200만원 한도)

○ 일자리 질 향상 지원을 위해 **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**하는 **중소·중견기업**에 대한 **세액공제*** 적용기한 **1년 연장**(~'24.12.31.)

* '22.6.30.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'23.12.31.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시 1인당 1,300만원(중소기업), 900만원(중견기업) 세액공제

□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* 혜택 확대 (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)

※「제1차 서비스산업발전전담팀(TF) 회의」('23.6.5.)에서 발표

* 외국인관광객이 물품 구매 시 ①즉시환급, ②도심환급 및 ③출국장환급 방법으로 부가가치세·개별소비세 등을 환급

○ 외국인관광객의 국내소비 촉진을 위해 **사후면세점 환급 최소 기준금액을 인하**(건당 3→1.5만원)하고, **즉시환급**(1회 50→70만원) **및 도심환급**(500→600만원) **한도 상향**

2) 기업경쟁력 제고

□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(조특법 · 상증법)

※「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」('23.7.4.)에서 발표

○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**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***(10%) **구간을 상향**(60→300억원)하고 **연부연납 기간 대폭 확대**(5→20년)

* 가업승계 시 증여재산가액 60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저율과세(상속시 합산과세)

증여재산가액(억원)	세 율(%)	
	현 행	개정안
0초과 ~10이하	0(기본공제)	0(기본공제)
10초과 ~ 60이하	10	10
60초과 ~ 300이하	**20**	**10**
300초과 ~ 600이하	20	20

○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**가업상속공제** 및 **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** 후 사후관리기간(5년) 동안 **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**(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내→대분류내)

□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(조특법)

※「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」('23.7.4.)에서 발표

○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국내건설모회사가 **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**에 대해 **대손충당금 한도 특례*** 신설

* (현 행) 대손실적율과 1% 중 큰 비율까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허용
(개정안)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(10년간 10%씩 단계적 상향)

□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 (국조법)

○ 주요국 시행시기에 맞춰 **소득산입규칙은 '24.1.1. 시행**하되 **소득산입보완규칙**은 **1년 유예**('24.1.1.→'25.1.1. 시행)

* ❶ 소득산입규칙(IIR):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세액을 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납부**('24.1.1. 시행)**
❷ 소득산입보완규칙(UTPR): 모기업의 소재지국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,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세액을 UTPR 도입국에 납부**('25.1.1. 시행)**

□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등 요건 완화 (법인법)

※「2023년 경제정책방향」('22.12.21.)에서 기본방향 발표

○ 핵심광물 등 자원확보를 위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· 간접외납세액 공제대상 **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**(5→2%)

□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(조특법 · 조특령)

※「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」('23.7.4.)에서 기본방향 발표

○ 대학 재정건전화를 위해 **수익용 기본재산**을 **대체취득**하는 경우 기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**대체취득자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**

구 분	현 행	개정안
대상자산	토지, 건축물	토지, 건축물, **유가증권**
취득시기	1년 이내	**2년 이내**
과세방식	3년 거치 3년 분할익금	**처분시까지 과세이연**

□ 동업기업 과세특례* 적용범위 합리화 (조특법 · 조특령)

※「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」('23.7.4.)에서 기본방향 발표

* 동업기업(법인)의 소득을 동업자(출자자)에게 배분하여 동업기업은 법인세를 면제하고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

○ **자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***에도 **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**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**이중과세 해소**

* 기업구조혁신펀드(4호) 등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허용

□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*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)

*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

○ 지주회사 설립·전환을 위한 **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특례** 적용기한 **3년 연장**(~'26.12.31.)

3] 창업 · 벤처 활성화

□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(소득법)

※「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」('23.7.4.)에서 기본방향 발표

○ **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**(연 500→700만원)하되,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**지배주주**(특수관계인 포함)**는 비과세대상 제외**

□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(조특법)

※「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」('22.11.4.)에서 발표

○ **민간벤처모펀드*** **출자 → 운용 → 회수 단계별 세제 지원 강화**

* 민간 투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

❶ (출자)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및 개인투자자 소득공제 신설

▪ **(법인투자자)**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하여 **벤처기업 등에 출자** 시 벤처기업 **출자금액의 5%*** **+ 증가분의 3%**** **세액공제**

* Max(**실제 벤처기업 출자금액**, **모펀드 투자금액의 60%**) × 5%
** (해당연도 벤처기업 출자금액 - 직전 3년 평균 벤처기업 출자금액) × 3%

▪ **(개인투자자)** 민간벤처모펀드 **출자금액**의 **10% 소득공제**

❷ (운용) 민간벤처모펀드 **운용사**(창업투자회사, 자산운용사, 증권사 등)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·운용용역의 **부가가치세 면제**

❸ (회수) 개인 및 민간벤처모펀드 **운용사**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**창업·벤처기업 주식·지분 양도차익 비과세**

□ 기술혁신형 M&A 세액공제* 확대 (조특법 · 조특령)

*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지분 50%(경영권 인수 시 30%) 초과 취득 시 기술가치금액의 10% 세액공제

○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 시 **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*** **상향**

※「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」('23.6.1.)에서 발표

* (현 행) Max〔특허권 등 평가금액, {양도가액 - (순자산시가×**130%**)}〕
(개정안) Max〔특허권 등 평가금액, {양도가액 - (순자산시가×**120%**)}〕

○ **법인세 세액공제가 인정**되는 **기술혁신형 중소기업**의 **지분**(50% 초과) **취득기간** 확대(최대 1→2년내)

2 민생경제 회복

◇ **주거비 등 서민·중산층 생계비 부담 경감, 소상공인·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경제회복 지원**

1) 서민 · 중산층 부담 경감

□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* 확대 (소득법)

※「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」('23.7.4.)에서 기본방향 발표

*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(한도: 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~1,800만원)

○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**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가격 기준**(5→6억원) **상향**

구 분	현 행				개정안			
상환기간	15년 이상			10년 이상	15년 이상			10년 이상
상환방식	고정 + 비거치	고정 또는 비거치	기타	고정 또는 비거치	고정 + 비거치	고정 또는 비거치	기타	고정 또는 비거치
공제한도 (만원)	**1,800**	**1,500**	**500**	**300**	**2,000**	**1,800**	**800**	**600**
주택가격 (취득당시 기준시가)	**5억원 이하**				**6억원 이하**			

□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* 한도 상향 (조특법)

※「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」('23.7.4.)에서 발표

*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% 소득공제

○ **주택청약종합저축** 가입 시 **소득공제 대상**이 되는 **납입한도 상향**(연 240→300만원)

□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* 적용기한 연장 (소득법)

* 간주임대료 소득세 부과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& 전용면적 40㎡ 이하인 주택 제외

○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시 **소형주택 비과세 특례** 적용기한 **3년 연장**(~'26.12.31.)

□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* 한시 상향 (조특법)

※「내수활성화대책」('23.3.29.)에서 발표

* 총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5~40% 소득공제
(신용카드 15%, 현금영수증·체크카드·도서공연등 30%, 전통시장·대중교통 40%)

○ **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**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**10%p 한시 상향**('23.4.1.~12.31.)

▪ **(전통시장)** 40→50%　　**(문화비)** 30→40%

□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(소득법)

※「2023년 경제정책방향」('22.12.21.)에서 기본방향 발표

○ **(고액기부) 3천만원 초과 기부금**에 대해 **세액공제율**(30→40%) **한시 상향***('24.1.1.~12.31.)

* (현　행) 1천만원 이하 15%, 1천만원 초과 30%
(개정안) 1천만원 이하 15%, 1~3천만원 이하 30%, 3천만원 초과 40%

○ **(용역기부)** 기부금 인정대상 **자원봉사용역 범위를 확대*** 하고 **용역가액 상향**(1일 5→8만원)

* (현　행) 특별재난지역 → (개정안) 국가·지자체·학교·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

□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(부가령)

※「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」('23.7.4.)에서 발표

○ 외이염, 결막염, 아토피성 피부염 등 **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***의 **동물병원 진료용역**에 대한 **부가가치세 면제**('23.10.1.~)

*「동물진료 표준화」 연구용역을 거쳐 '23년 하반기 중 고시 예정(농림부)

□ 경차 유류세 환급*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)

* 경형자동차(1세대 1차량)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유류에 부과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(연 30만원 한도)

○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절약유도를 위해 **경형 자동차 연료**에 부과된 **유류세 환급** 적용기한 **3년 연장**(~'26.12.31.)

□ 맥주 · 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* 개선 (주세법)

* 맥주·탁주에 대한 주세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(CPI) ±30% 범위 내 조정

○ **물가연동제**를 **폐지**하고 주종별 세부담 차이를 반영하여 **필요시 법정세율***의 **±30% 범위**에서 **탄력세율**(시행령) **조정**

* (맥주) 885.7원/ℓ, (탁주) 44.4원/ℓ

□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* 적용기한 연장 (주세법)

* '20년 맥주 종량세 전환시 생맥주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생맥주 경감세율(△20%) 한시 도입

○ 서민주류 가격안정 및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**생맥주 세율 한시경감제도** 적용기한 **3년 연장**(~'26.12.31.)

□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)

○ 영농·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**농·임·어업용 석유류**(면세유)에 대한 **부가가치세·개별소비세 등 면제** 적용기한 **3년 연장**(~'26.12.31.)

□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)

○ 영구임대주택 거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**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**에 대한 **부가가치세 면제** 적용기한 **3년 연장**(~'26.12.31.)

□ 학교 · 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)

○ 학생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**학교, 공장, 건설현장** 등에서 공급하는 **급식용역**에 대한 **부가가치세 면제** 적용기한 **3년 연장**(~'26.12.31.)

2] 소상공인 · 중소기업 지원

□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(조특법)

※「내수활성화대책」('23.3.29.)에서 발표

○ **전통시장**에서 지출하는 **기업업무추진비**에 대해 일반 손금산입 한도*의 **10% 추가 손금산입 인정**

* 기본한도(일반기업 1,200만원, 중소기업 3,600만원) + 수입금액의 0.3%

□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 (조특법)

○ **개인택시 간이과세자**가 구입하는 **자동차**에 대한 **부가가치세 면세** 제도를 **환급 제도*로 전환**('25.1.1.~)

* 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과세로 전환,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사후 환급

□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* 출연 시 손금산입 허용 (조특법)

* (국민행복기금)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, 지급보증 사업 등 수행

○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**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**(국민행복기금) **출연금**에 대해 **손금산입 특례 적용**

* (현행)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 허용

□ 재기중소기업인 특례*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 · 조특령)

*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인 등(매출 15억원 미만)에 대해 체납에 따른 압류·매각 유예,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(최대 3년)

○ 특례 적용 **재기중소기업인**의 **범위***에 **「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」 융자**를 **받은 자를 추가**하고, 적용기한 **3년 연장**(~'26.12.31.)

* (현행) 중진공·기보·신보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,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,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

□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*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)

*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(매출 15억원 미만)의 징수곤란 체납세금에 대해 ❶납부지연가산세 면제, ❷분납(최대 5년) 허용

○ **적용대상** 체납세금을 '22.7.25.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**'23.7.25. 기준**으로 **확대**하고, **신청기간 1년 연장**(~'27.12.31.)

□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*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)

※「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」('23.7.4.)에서 발표

*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70%(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%)를 소득·법인세에서 공제

○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**상가임대료 인하액**에 대한 **세액공제** 적용기한 **1년 연장**(~'24.12.31.)

□ 영세 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(부가법 · 조특법)

※「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」('23.7.4.)에서 발표

❶ **영세 개인음식점**(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)에 대한 **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*** **공제율 확대**(8/108→9/109) **특례** 적용기한 **3년 연장**(~'26.12.31.)

*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(공제율)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

❷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**신용카드 사용 등 세액공제 우대 특례*** 적용기한 **3년 연장**(~'26.12.31.)

*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율(1.0→1.3%) 및 공제한도(연 500→1,000만원) 우대

❸ 택시기사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 **일반택시 운송사업자**에 대한 **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*** 적용기한 **3년 연장**(~'26.12.31.)

* 운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택시기사에게 현금 지급, 감차재원,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재원으로 활용

□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)

○ 성실신고 유도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**성실사업자** 등에 **대한 의료비·교육비·월세 세액공제**의 적용기한 **3년 연장**(~'26.12.31.)

□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*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)

*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계액 중 40원/kg 감면(316→276원/kg)

○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**택시연료**로 **사용**하는 **LPG**(부탄)에 대한 **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**(~'26.12.31.)

3 미래 대비

◇ **결혼·출산·양육 및 노후대비,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인구·지역 위기 대응역량 강화**

1) 결혼 · 출산 · 양육 지원

□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(상증법)

※「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」('23.7.4.)에서 기본방향 발표

○ **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**(4년간)**에**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**1억원 추가공제**

< 증여재산 공제한도 >

구 분	현 행	개정안
배우자	6억원	(좌 동)
직계존속 → 직계비속	**5천만원** (미성년자 2천만원)	**5천만원**(미성년자 2천만원) **+ 혼인공제 1억원**
직계비속 → 직계존속	5천만원	(좌 동)
기타친족	1천만원	(좌 동)

□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(조특법)

※「저출산·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」('23.3.28.)에서 기본방향 기발표

○ 자녀장려금 **소득상한 금액을 대폭 상향**(4,000→7,000만원)하고, **최대지급액 인상**(자녀 1인당 80→100만원)

□ 출산 · 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(소득법 · 소득령, 법인령)

❶ 출산 · 보육수당 비과세* 한도 상향(월 10→20만원)

※「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」('23.7.4.)에서 기본방향 발표

*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

❷ 근로자 출산 · 양육 지원금의 손금 · 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

※「저출산·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」('23.3.28.)에서 발표

□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(소득법)

❶ 영유아(0~6세)에 대한 **의료비 세액공제**(15%) **한도* 폐지**

* (현 행) 연 700만원 (본인·장애인·65세이상자 한도 없음)

❷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**의료비 세액공제**(한도: 연 200만원) **요건 완화**

* (현 행) 총급여액 **7천만원 이하** 근로자 → (개정안) **모든 근로자**

2)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

※「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」('23.7.4.)에서 기본방향 발표

□ 청년도약계좌* 등 가입요건 완화 (조특법)

* 소득 7,5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이자·배당소득 비과세 + 정부지원금(월납입금액 3~6%)

○ **청년도약계좌 등** 가입 시 **육아휴직급여**(비과세 소득)만 있는 경우도 **가입 허용**

□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* 전환가입 허용 (조특법)

* 청년형장기펀드(의무보유 3년) 납입금액(연 600만원 한도)의 40% 소득공제

○ **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을 허용**하고 **소득공제 특례** 적용기한 **1년 연장**(~'24.12.31.)

□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*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)

* 군복무기간 중 가입하여 저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(월 40만원 한도) 이자소득 비과세

○ 복무 중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**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** 적용기한 **3년 연장**(~'26.12.31.)

□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*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)

* 무주택 청년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(500만원 한도)

○ 청년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**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**(~'25.12.31.)

□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(소득법)

○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, 퇴직연금 등 **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* 기준금액 상향**(연 1,200→1,500만원)

* 연금 수령액에 대해 3~5%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

3) 지역균형 발전

□ 기회발전특구*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(조특법)

※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별도 발표 예정

* 비수도권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재정·세제지원, 규제특례 등 패키지로 지원(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)

❶ **(이전단계)** 특구 이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**이전기업**에 대한 **양도세 등 과세특례** 부여

❷ **(운영단계) 특구 창업**(또는 사업장 신설) **기업**에 대해 **소득·법인세 감면**을 신설하여 특구 내 **기업운영 지원**

❸ **(투자단계)** 민간자본 유입 촉진을 위해 **기회발전특구펀드*** **이자·배당소득**에 대해 **세제 지원**

*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특구 입주기업·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펀드

□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(농특법)

○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소요재원 확충을 위해 **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**(~'34.6.30.)

□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)

○ 연구개발특구,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**지역특구 내 창업**(또는 사업장 신설) 기업 등에 대한 **소득·법인세 감면*** 적용기한 **2년 연장**(~'25.12.31.)

* 3년 100% + 2년 50%

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

◇ **신속한 권리구제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조세회피 관리 강화,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한 과세형평 제고**

1) 납세자 권익 보호

□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* 범위 확대 (국기령)

* 소액사건은 국세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또는 조세심판관 단독처리 가능

○ **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**를 위해 이의신청 · 심사청구 · 조세심판 청구 **소액사건 범위 확대**(3,000→5,000만원 미만)

□ 조세불복 대리인 적용범위 확대 (국기법)

○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**친인척이 대리**할 수 있는 **조세불복 청구금액 확대**(3,000→5,000만원 미만)

□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 (국기령)

○ 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 시 **결격사유 규정***을 통해 비상임조세심판관에게 필요한 **자격요건 강화**

* 「공직자윤리법」 상 취업심사대상기관(법무 · 세무법인 등) 소속이거나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자,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 등 제외

□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(상증법)

○ 공익법인의 **지출의무**(출연재산가액의 1%) **위반**시 '**증여세***' 및 '**미달 사용액 10% 가산세**' 부과에서 '**미달 사용액 100% 가산세**'로 전환

* 과세대상: 지분율 5% 초과 주식 보유분

○ 연도별 지출 편차 등을 고려하여 **의무지출 실적** 산정 시 **당해년도** 또는 **5년 평균금액** 중 **선택 허용**

□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(관세법)

○ **보정기간**(신고납부일부터 6개월) **경과 후 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**시 **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확대***

* (현 행) (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) 20%, (6개월~1년 6개월) 10%
(개정안) (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) 30%, (6개월~1년) 20%, (1년~1년 6개월) 10%

□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금액 기준 현실화 (주류면허법)

○ **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**인 '**주세포탈 기준금액**'을 **물가상승률*** 및 **납세자 권익보호** 필요성을 감안하여 **2배**로 **상향 조정**

* 현행 주세포탈 기준금액은 `99년말 주세법 개정으로 결정된 이후 변동 없음

< 주세포탈 금액 기준 조정 >

현 행			개정안	
탁주	50만원 이상	⇨	탁주	100만원 이상
맥주	1천만원 이상		맥주	2천만원 이상
증류주, 주정	500만원 이상		증류주, 주정	1천만원 이상
기타 발효주류 등	200만원 이상		기타 발효주류 등	400만원 이상

□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(관세법)

○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**수출입물품 검사 시** 부과하는 **수수료* 폐지**

* 기본수수료(소요시간×2천원) + 실비상당액

□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쓰기 (소득법 · 소득령)

○ **일반 국민**도 부동산 양도세 **개요**를 **이해**하고, **조세전문가**는 법령을 **쉽고 명확하게 적용**할 수 있도록 **양도세제** 정비

▪ **양도세 계산방법** 및 **주요 특례 제도***에 대한 **요약규정** 신설

* (현행) 각종 특례((예)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: 8가지 유형 및 총 25개항)가 요약 규정 없이 서술식으로 나열되어 있어 이해 곤란

▪ **도표** 및 **계산식**을 적극 활용하고, **장문**(長文) **규정**은 **단문**(短文)을 **사용**하여 세부 요건별로 **분리 기술**

2) 조세회피 관리 강화

□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(국조법)

○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**위탁자에 신탁정보** 및 **신탁재산 가액** 등 **자료 제출의무 부여***('26.1.1.이후 부터 신고)

* 해외신탁 설정 또는 해외신탁에 재산이전 시(1회),
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·통제 시(매년)

□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(소득법)

○ 국내자회사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**외국모법인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***에 대한 **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**

* 주식매수선택권, 주식 및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

□ 매입자 납부특례* 적용대상 확대 (조특법)

*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구매대금을 금융기관의 전용 거래계좌에 납입하면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납부

○ 스크랩등의 매입자납부특례 **적용대상**을 **비철금속류로 확대***

* (현 행) 금지금, 고금, 금·구리·철스크랩
(개정안) 비철금속류(알루미늄·니켈·납·아연·주석등) 추가

□ 우회덤핑* 방지제도 도입 (관세법)

*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에 있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

○ 덤핑방지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**우회덤핑 물품**에 대해서도 **덤핑방지 관세**를 **동일하게 부과**

□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 (관세법)

○ **관세포탈죄 등**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**포탈관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**인 경우 **인적사항 · 포탈관세액 등 공개***

* (현행)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만 공개

□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(조특법)

○ **증여자 또는 수증자**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**조세포탈·회계부정**으로 **처벌**받은 경우 **증여세 과세특례*** **적용**을 **배제**

*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, 영농자녀 증여농지 증여세 감면

□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(소득법 · 소득령)

○ **주택 개념**에 **주택의 구조상 특성***을 반영하여 **구체화**

* 출입문, 취사시설,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되는 등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(주택법)

○ 건축물을 **주택으로 용도변경**한 경우 **1세대 1주택 비과세** 및 **장기보유특별공제* 보유기간 요건**을 **용도변경일부터 기산**('25.1.1.~)

* 용도변경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
→ ❶전체 보유기간(취득일~양도일)에 대해 일반 공제율 적용한 금액, ❷'용도변경일~양도일'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

□ 주류제조 · 판매면허 취소자의 면허재취득 제한 강화 (주류면허법)

○ 면허취소 후 2년 미도과자의 친족 등 **특수관계인**이 면허취소된 영업장과 **동일한 장소**에서 **동일한 면허** 신청시 **재취득 제한**

□ 원산지인증수출자*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 (FTA관세특례법)

*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능력 등이 있다고 인정받아, FTA협정 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에 관해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는 수출자

○ **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시** 필요한 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고의로 미제출하는 등 **부정한 행위**에 대해 **처벌* 근거 마련**

* 2,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

3) 과세형평 제고

□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* 확대 (소득령)

* 변호사, 병·의원, 교습학원, 가구소매업 등 125개 업종 지정

○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**13개 업종***을 **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**에 추가

* 여행사업, 앰뷸런스서비스업, 수영장운영업 등

□ 플랫폼 종사자 등의 소득파악 기반 공고화 (조특법 · 소득법 · 소득령)

○ 용역제공자(대리기사, 캐디 등)의 소득파악을 위해 **과세자료 제출**에 대한 **세액공제*** 적용기한 **3년 연장**(~'26.12.31.)

*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 제공 또는 용역을 알선·중개하는 자가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시 제출인원 당 300원 공제(연 200만원 한도)

○ 인적용역 제공자가 **계속적·반복적 소득**을 얻는 경우 **원천징수**가 **누락되지 않도록** 과세기준 마련*

* 계속적·반복적 활동을 통하여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이 소액(1천원 미만)이라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

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(법인법 · 법인령)

○ 감자 및 출자감소 등 **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소득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**

□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* 대상소득 합리화 (조특령)

*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 축산업·임업 소득,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산물 유통·가공·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 등에 대해 5년간 법인세 50% 감면

○ **농업회사법인**의 법인세 **감면대상 소득**에서 **수입농산물 유통·판매 소득은 제외**

□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(국조법)

○ 조세조약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체약상대국과의 **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*** **설치**를 위한 **국내법적 근거 마련**

* 조세조약 이행 및 국제조세 분야 협력 관련사항 정기 논의를 위한 체약국간 공동 협의기구

참고 **'23년 말 일몰도래 조세지출 정비 · 재설계 · 연장 현황**

◇ **71개(일몰 64건+부분일몰* 7건) 항목 중 종료 6개, 재설계 7개, 적용기한 연장 58개**

* 제도 중 일부 내용에 일몰 설정(예: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는 '23년말 일몰)

□ **(정비원칙) 정책목적 달성, 정책효과 미흡** 조세감면제도를 **우선적으로 폐지·축소**

□ **(정비대상)** 금년 일몰도래 제도 중 **총 6건 일몰 종료 추진**

* 연도별 일몰 종료 건수: ('18) 7건, ('19) 4건, ('20) 9건, ('21) 9건 ('22) 9건

구분	제 도 개 요	사 유
종료 (6)	•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(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)	유가 안정세 등 정책목적 달성 및 일반주유소 휴·폐업 증가 상황 고려
	•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	최근 5년간 감면실적 전무
	• 천연가스(CNG)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	CNG 버스 보급 촉진 등 정책목표 달성
	•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	최근 5년간 감면실적 전무
	•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	
	•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	전용계좌 개설 수, 거래금액·건수 증가 등 정책목표 달성
재설계 (7)	•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	조세특례 적용대상 합리화
	•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	
	•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	
	•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	적격 리츠·펀드간 전환 가입 시 감면세액 추징 면제
	•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	
	•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	감면세액 추징사유 합리화
	•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	세액공제 대상 결제수단 추가
연장 (58)	•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	정부출연금을 통한 R&D 확대 및 일시적 과세부담 완화
	•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	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등의 R&D투자·사업화 촉진
	•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	기업 연구개발 촉진
	•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	국내 연구개발 역량 강화
	•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	우수 외국인근로자 유치
	•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	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촉진
	• 통합고용세액공제(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)	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

구분	제 도 개 요	사 유
	•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	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취약계층 취업 촉진
	•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	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유도
	•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	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 경감 및 효율적 구조조정 촉진
	• 채무인수·변제에 대한 과세특례	
	•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	
	•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	
	•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	벤처 재투자 장려 및 벤처창업자의 노하우 전수 지원
	• 금융기관의 자산·부채 인수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	금융시장 안정성 제고 위한 부실금융기관 정리 지원
	•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	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속 및 대규모 부동산 매각에 장기간 소요
	•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	농어촌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지원 지속
	•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(한국농어촌공사·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)	은퇴 고령농업인 소득안정 및 영농 규모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지원
	•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	공익사업 수행 지원
	•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	
	•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	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공장·물류시설을 이전한 기업 지원
	•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	
	•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	저소득 청년 주택 구입 위한 목돈 마련 지원
	•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	장병 복지 향상 및 전역 후 목돈 마련 지원
	•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	소상공인 지원
	•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	위기지역 경기회복 지원
	•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	서민금융 지원
	•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	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지원
	•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	도시철도 건설 및 확대 촉진 유도
	• 공장·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	근로자, 학생 등에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제공으로 복지증진 지원
	• 농·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	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 및 농어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 지원
	•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	영세서민의 주거비용절감 및 주거안정 지원
	• 농업·임업·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	농어민등의 영농·영어비용 경감
	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	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지원

구분	제 도 개 요	사 유
	•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(재활용폐자원의 경우)	재활용폐자원 수집활동 지원을 통한 재활용 촉진
	•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	경차 보급 확대로 에너지 절약 유도 및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
	•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	택시업계 유류비부담 완화
	• 농・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	농어민 지원
	• 창업중소기업의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	소액창업 지원
	• 금융시장 효율화, 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(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를 위한 주식양도)	현물・선물가격 괴리 축소를 통한 시장 안정화 및 효율화
	•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	기업 경쟁력 제고 목적 구조조정 활동 지원
	• 신재생에너지 생산·이용 기자재 관세 감면	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지원
	•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	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활성화
	• 제주투자진흥지구・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	제주투자진흥지구 활성화
	•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	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
	•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	금융중심지 활성화
	•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	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
	•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(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)	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및 농업인 권익보호 지원
	•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(명칭사용용역,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)	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및 어업인 권익보호 지원
	•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	선제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사업재편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 유지 필요
	• 채무의 인수・변제에 대한 과세특례	
	•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	
	•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	
	•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	
	•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	
	•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	성실신고 유도
	•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관세면제	금 현물시장 활성화, 금 거래 양성화
	• 면세 농·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(소규모 개인음식점 공제율)	영세 개인음식점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

Ⅳ.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

□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**세수효과**는 **△4,719억원**

○ **(증가 요인)**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등

○ **(감소 요인)** 자녀장려금 확대,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확대, 장기저당주택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확대 등

< 연도별 세수효과 (전년대비 기준) **>**

(단위: 억원)

구 분	합 계	'24년	'25년	'26년	'27년	'28년 이후
합 계	**△4,719**	**△7,546**	**1,778**	**241**	**△269**	**1,077**
소 득 세	**△5,900**	△7,415	879	636	-	-
법 인 세	**1,690**	119	1,572	△1	-	-
부가가치세	**△437**	77	△370	△144	-	-
기 타	**△72**	△327	△303	△250	△269	1,077

2 세부담 귀착

(단위: 억원)

서민·중산층[1]	고소득자	중소기업	대기업	기 타[2]	합 계
△6,302	△710	△425	△69	2,787	**△4,719**

1」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200% 이하인 자 (총급여 7,800만원 이하인 자)

2」 외국인·비거주자·공익법인 등 귀착 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

Ⅴ. 세법개정 추진일정

1 개정대상 법률 : 총 15개

□ 내국세(13개)

○ 국세기본법, 소득세법, 법인세법, 상속세 및 증여세법, 부가가치세법, 인지세법, 주세법, 교육세법, 농어촌특별세법, 국세징수법, 조세특례제한법,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,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

□ 관세(2개)

○ 관세법,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

2 추진일정

□ 7월 27일(목) :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

□ 7월 28일(금) ~ 8월 11일(금) : 입법예고(14일간)

□ 8월 29일(화) : 국무회의

□ 9월 1일(금) : 정기국회 제출